

#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0.5.>

## 제2장 입학

**제2조(입학전형위원)**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합격사정)** 합격사정은 학과별 사정과 대학원위원회 사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**제4조(학과별 사정)** 학과별 사정에 있어서는 학과교수회의에서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한다.

**제5조(대학원위원회 사정)**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제청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합격여부를 확정한다.

1.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.
2. 학과별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.
3. 학과별 사정에서 합격에 제청된 자라도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할 수 있다.
4. 학과별 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시킬 수 없다.

**제6조(입학의 허가)**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입학이 허가된다.

**제7조(재입학)** ①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자는 등록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입학원서
2. 학점인정원
3. 재입학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

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수업, 학점, 시험 및 학위수여

### 제1절 수업 및 학점

**제8조(학점)**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매학기 15시간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,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2.8.>

②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12.23.,

2016.10.5.>

(단위: 학점)

구 분	학 과	전공필수	전공선택	계
학위논문 제출자	일반행정학과	4	20	24
	사법행정학과 의회정치.안보정책학과	6	18	
	사회복지학과	9	15	
졸업시험 응시자	일반행정학과	4	28	32
	사법행정학과 의회정치.안보정책학과	6	26	
	사회복지학과	9	27	36

③ 전공선택과목중 최소 6학점은 각 전공별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23.>

**제9조(교과과정 선정)** 각 학과 학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과별·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교과과정의 개정)** ① 확정된 교과과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과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 장에게 제출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교과목 개설)** 각 학과 학과장은 개강 1월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선정하고 설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## 제2절 수강신청, 전공선택 및 변경

**제12조(수강신청)**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하여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.

1.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개강일전까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입생은 수강신청서 제출시 대학원 학생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수강신청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.

**제13조(수강신청과목 변경)** ①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.

1. 대학원 교수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설강과목을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

2.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 교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.

**제14조(추가등록)** ①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2.8.>

- ② 추가등록금은 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,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2.8.>

**제15조(전공선택 및 변경)** ① 신입생은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중에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교학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또는 제3차 학기 등록기간내에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3절 성적 및 시험

**제16조(성적계산)** 학칙 제21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.

**제17조(출석성적)** 제16조의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에의 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.

**제18조(결석사유의 인정)** 공무출장,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**제19조(학점인정)**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70점 이상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학점의 특별인정)** 전공변경자 및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점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.

1.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.
2.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.

**제21조(재입학자의 학점인정)**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.

**제22조(수료학점 및 인정시기)** ①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는 4회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위논문 제출자는 24학점 이상, 졸업시험 응시자는 32학점(단,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)을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2.>

-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, 별지 제2호

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**제23조(과정수료인정학점)**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80점 이상으로 한다.

**제24조(성적정정)**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성적정정원
2. 정정사유서
3.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

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
**제25조(결시신청)** 정г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
2.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장·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(다만,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.)
3.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

**제26조(추가시험)** 학칙 제20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.

1. 추가시험의 과목,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.
2.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.  
가.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 
나.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(다만, 출석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)
3.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,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.
4.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.

**제27조(학위신청자격시험)** ①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과목, 기간(시간)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 학기초 1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·공고하고 이를 시행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,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.

③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(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)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등록을 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는 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2. 석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3.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3.6.17.>

④ 시험위원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

원장이 위촉한다.

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.
2.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2과목 이상을 포함한 3과목으로 하고,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60분간으로 한다. <개정 2008.1.2.>

⑥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.

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자는 최소 수업연한 경과후 1년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.
2.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중 재응시 할 수 있다.
3.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중 불합격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, 1과목일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.

⑧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
2. 학과장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3. 소정의 전형료 납부

#### 제4절 학위논문 및 졸업시험

**제28조(학위논문제출자격)**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,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학위신청자격시험(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1.22.>

②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·인준한다.

**제29조(논문지도교수)**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 논문지도교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한다.

**제30조(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졸업시험 신청)** ①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3차 학기초(또는 2학기초)에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을 하고,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추가학점이수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3차 학기 등록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 학과장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2.14.>

④ 학위논문제출을 통한 학위취득 혹은 추가학점이수를 통한 학위 취득간의 변경 신청은 4차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얻어 가능하며,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. <신설 2023.2.14.>

**제31조(논문지도교수의 변경)**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동일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.

**제32조(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)**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, 연구, 목적,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4차 학기(또는 3차학기)에 작성·발표하고,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. 다만,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(중간보고서 제출)** 제32조의 연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요지, 의견, 기타 진행사항을 기록한 학위논문 중간보고서를 4차학기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2.>

**제34조(학위논문작성)** ① 학위논문은 국·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. <개정 2016.10.5.>

1. 국문논문의 경우: 국문초록을 앞에 영문초록은 뒤에
2. 영문논문의 경우: 영문초록을 앞에 국문초록은 뒤에

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.

**제35조(학위논문 제출시기 및 졸업시험 시행시기)** ①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2회로 한다.

② 졸업시험은 32학점(단,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)을 등록 신청한 자에 한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. <개정 2014.1.22.>

**제36조(학위논문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시한)** 학위논문 심사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 또는 재응시 할 수 있다.

**제37조(학위논문 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절차)**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2.14.>

1.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
2. 지도교수 추천서
3.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
4.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<신설 2023.2.14.>

③ 졸업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구비하여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논문심사위원 및 졸업시험위원 선정)**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지도교수

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.

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·확정하고,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.

③ 졸업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.

**제39조(논문심사위원장)**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,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,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

**제40조(심사위원 교체금지)**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 그러나 심사위원이 해외여행, 질병, 사고,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**제41조(논문의 예비심사)**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술이론의 타당성, 연구의 가치,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.

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(구술시험 병행)를 받는다.

③ 논문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, 부논문, 역본, 모형, 표본,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.

⑤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·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가능성을 판정한다.

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.

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42조(논문의 본심사)**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.

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·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.

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

**제43조(논문의 재심사)**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1학기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본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.

**제44조(논문평가)**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**제45조(구술시험)**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**제46조(논문심사결과보고 및 자격사정)**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.

**제47조(학위논문체제)** 학위논문의 체제 및 편제,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.

**제48조(학위논문 제출부수)**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4부(하드카버)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2.8.>

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9조(학위수여)**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50조(학위취소)**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## 제4장 휴학, 복학, 퇴학 및 제적

### 제1절 휴학 및 복학

**제51조(휴학절차)**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입대휴학자는 징·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(다만,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)
2.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
3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
4. 휴학원서

**제52조(휴학시기 및 기간)**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에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.

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.

③ 일반휴학 기간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통산하여 여섯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해외근무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1회 휴학으로 본다. <개정 2011.2.8.>

**제53조(복학절차)**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전에 다음 각 호의 복학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복학원서(소정양식)
2.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
3. 휴학확인서(소정양식)

② 제1항의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.

**제54조(복학생 등록)**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## 제2절 징계, 퇴학 및 제적

**제55조(징계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처분한다.

1.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
2. 장학금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위조자
3.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4.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

**제56조(제적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 처리한다.

1.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
2.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3.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
4.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

## 제5장 연구과정

**제57조(연구과정의 목적)**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8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**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(2학기)으로 하고, 재학연한은 2년(4학기)으로 한다. 다만,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59조(취득학점)**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.

**제60조(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)**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.

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표에 의한다.

구 분 과 정	공통필수	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	계
연구과정	2학점(1과목)	10학점(5과목)	12학점(6과목)

**제61조(수료증)**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.

**제62조(연구보고서 제출)**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 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 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.

## 제6장 장학금

**제63조(장학생 선발)** ①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평가는 졸업(수료)학점 인정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전학기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장학금 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.

##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

**제64조(학과장)**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**제65조(교과목 담당교수)**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
2.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
3. 교내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소지자
4.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
5.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

**제66조(교과목 담당제한)**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(2학점 또는 3학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2.8.>

**제67조(강사제청)**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은 개강 1월전에 시간강사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8조(강사변경)**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학과장은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9조(간사)** 대학원 교학행정실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 <개정 2014.1.22.>

**제70조(보칙)**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부칙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 <제20호, 1998.10.19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30호, 1999.2.19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40호, 2000.5.8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44호, 2001.2.16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53호, 2002.9.24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세칙 발령당시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 세칙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.

② 이 세칙 발령당시 사회복지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제30조제3항의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수료이전에 추가학점이수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**부칙 <제59호, 2003.6.17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64호, 2003.12.24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8조 제2항의 개정세칙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 <제85호, 2007.8.24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89호, 2008.1.2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93호, 2008.8.22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95호, 2009.1.12.>**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02호, 2009.12.23.>**

①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하되 세칙 제8조제1항은 개정세칙을 적용한다.

**부칙 <제108호, 2011.2.8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23호, 2014.1.22.>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32호, 2016.10.5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시행세칙 당시 위기관리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 등에게는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

**부칙 <제171호, 2023.2.14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)** 제30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인 수료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과장 승인을 얻어 학위과정 변경·신청이 가능하다.

정책대학원

제 호

수 료 증

성 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학과( 전공)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(학위) (성명) (직인)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(성명) (직인)

정책대학원

연구 제 호

수 료 증

성 명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학과( 전공)연구과  
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(학위) (성명) (직인)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(성명) (직인)

정책대학원

연 실 제 호

## 연구 실적증명서

성 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          학과(           전공)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,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(학위) (성명) (직인)